

인천검단 AA9블록 행복주택 14형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04.30]

1. 건설위치

· 인천검단 AA9블록 행복주택 :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3로 220

- LH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신청 관련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은 **14A·B형 대학생/청년 계층의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며, 14형 외의 형별·계층별 모집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격완화요건

자격구분	완화내용
소득요건	◦ 소득요건 배제
총자산요건	◦ 총자산요건 배제 하되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803만원 이하 일 것 (※단, 대학생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기간요건	◦ 청년계층(사회초년생) 소득종사기간 7년 이내 면 가능

■ 갭신계약 관련 안내사항 (8. 유의사항 참고)

· (소득·총자산 요건 완화 입주자)

- 소득, 총자산 요건이 **1회 미충족시에도 재계약 허용 (임대조건 할증 없음)**
- 소득, 총자산 요건이 **2회 미충족시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허용 (임대조건 할증 없음)**
- 다만, 갭신계약시점에 자격 검증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대거주기간 이내로 갭신계약 가능합니다.

2. 임대대상 및 조건

■ 임대대상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공급 호수	현재 공가 호수	금회 모집 인원	세대 당 계약면적(m²)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및 난방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 공용	주차장			
14 A-B	대학생	576	125	300	14.68	7.7435	1.0624	5.8968	29.3827	10 (8.유의사항 경신계약 등 참고)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역난방
	청년				14.78	7.7962	1.0697	5.9369	29.5828		

- 현재공가호수는 모집공고일(2025.04.30) 현재 기준으로 기존입주자의 해약 및 기선정된 예비입주자의 입주 등으로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대기중인 예비자 및 공가세대 수에 따라 당첨되는 예비순번이 앞 번호인 경우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14A-B형의 “대학생계층”과 “청년계층”의 공급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14A-B형 주택에는 책상/책장, 소형냉장고/냉장고장, 가스쿡탑(2구형)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임대조건

공급 형별	공급 대상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원)	월 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14 A-B	대학생	15,368,000	768,400	14,599,600	70,430	(+) 1,000,000	16,368,000	64,590
						(-) 12,000,000	3,368,000	105,430
	청년	16,272,000	813,600	15,458,400	74,580	(+) 2,000,000	18,272,000	62,910
						(-) 13,000,000	3,272,000	112,490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위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30) 현재 기준**이며, 「행복주택 공급 및 운영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금회 공고를 통해 모집하는 계약자의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단,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3-1.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30)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㉓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㉓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 ①-㉓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①-㉓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소득요건 배제
- ④ 자산요건 배제(단, 신청자 본인이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미소유를 입주자격으로 하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

■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경기도(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추천

3-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30)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㉓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㉓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 ①-㉓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5.05.01 ~ 2006.04.30)

①-④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소득요건 배제**

④ **자산요건은 배제**하되, 해당 세대의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803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을 적용**

단, 청약신청시 '소득 없음(無)'으로 신청하였으나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조회결과 소득이 조회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쳐 소득有無에 따라 해당되는 청년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함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①-④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①-④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①-④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구분	해당세대 범위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경기도(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추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공급대상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계약체결
대학생계층 · 청년계층	▶ 인터넷(PC · 모바일)접수 '25.05.14(수) 10:00 ~ '25.05.15(목) 16:00 ※신청접수는 인터넷(PC · 모바일)접수만 진행합니다.	'25.05.21(수) 16:00 이후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 등기우편접수 '25.05.21(수) ~ 05.27(화) ※서류제출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34 LH인천북부권주거복지지사 8층 행복주택공급 담당자 앞 * 5.27(화) 일자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함 * 신청접수번호를 필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접수는 등기우편접수만 진행합니다.	'25.07.30(수) 16:00 이후 *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 ARS(1661-7700)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 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플러스 별도게시	개별안내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거 추후 계약 순번 도래시 개별안내)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만 받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일반우편접수 및 현장접수 불가)

(등기우편 제출 주소) : (우:2214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34(주안동) 에이스빌딩 8층
LH인천북부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 서류제출 대상자는 부적격 신청자, 신청 포기자 등을 고려하여 공급세대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류 미제출, 자격기준 초과 등으로 부적격자가 발생하여 적격자가 모집인원(예비입주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자만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및 자동차가액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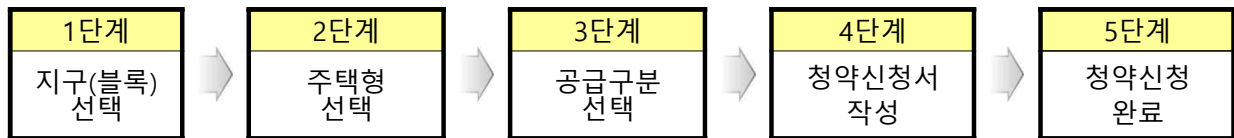
○ 인터넷(PC) 신청자

- * 청약방법 :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 앱 ("LH 청약플러스"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5.05.14(수)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25.05.15(목) 오후 4시까지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24.05.15 16:00)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에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5.05.14(수)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25.05.15(목) 오후 4시까지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24.05.15 16:00)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025.05.21(수) 16:00이후**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PC : LH청약플러스 → 『청약』 클릭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 : '25.05.21(수)~05.27(화), '25.05.27(화) 소인분까지만 유효]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5.05.27)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34(주안동) 에이스빌딩 8층, LH인천북부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우편번호: 22149)

* 제출서류는 첫장에 단지명, 신청형별, 접수번호,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5.04.3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및 동의방법 - 대학생 계층 및 세대원인 청년(단독세대주 포함) : 신청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 세대주인 청년계층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서명 또는 날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선정 방법 참고)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주의) 동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내양식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내양식
입주자격완화 약약서	•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약약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내양식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부 지센터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행정부 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내용으로 신청인과 동일등본에 기재된 타인의 관계 확인이 불가하여 계층별 "해당세대"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제출(예 : 신청자 세대가 제3자인 세대주 등본에 동거인으로 거주중인 경우 등)	행정부 지센터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대학 생 계 층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 를 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대학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청 년 계 층	청년 (19세이상~39세이하)	·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제출서류 없음 ※ 단, '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 ' 신청자 및 순위를 소득근거지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 아래 청년계층의 '해당자만 제출'란 확인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으로 신청한 사람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7년이 경과한 자 중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경우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연구기관, 기관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경우 : 복무 확인서(복무 중인 경우) 또는 병적증명서(복무완료인 경우)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u>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u>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해당 학교
--	--	---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 2025.07.30(수) 16:00 이후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http://apply.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조회)

- 당첨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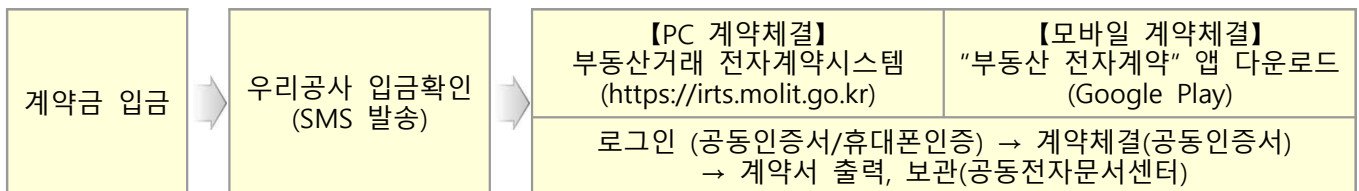
■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개별계약)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기 순위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안내예정)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시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는 계약안내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계약 관련 사항은 입주 순번 도래시 별도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며, 아래 온라인 전자계약 체결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계약체결 절차】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됩니다.
-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 ~ 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SMS는 신청접수 시 “SMS 수신동의”한 신청자에 한하여 발송하고, 수신동의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저장 가능합니다.

7. 무주택 · 자동차가액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자동차가액 산정방법

자동차가액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자동차가액 자료 출처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입주자격 완화사항	■ 입주 자격 완화 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소득요건 완화</td><td>소득요건 배제</td></tr> <tr> <td>자산요건 완화</td><td>자산요건 배제 ※ 단,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기준은 완화대상이 아니며, 대학생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계층은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일 것을 충족하여야 함</td></tr> <tr> <td>기간요건 완화</td><td>청년(사회초년생) 계층으로 신청 시 총 소득종사기간 기본 : 총 5년 이내 → 완화 : 총 7년 이내</td></tr> </tbody> </table>	항목	내용	소득요건 완화	소득요건 배제	자산요건 완화	자산요건 배제 ※ 단,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기준은 완화대상이 아니며, 대학생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계층은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일 것을 충족하여야 함	기간요건 완화	청년(사회초년생) 계층으로 신청 시 총 소득종사기간 기본 : 총 5년 이내 → 완화 : 총 7년 이내
항목	내용								
소득요건 완화	소득요건 배제								
자산요건 완화	자산요건 배제 ※ 단,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기준은 완화대상이 아니며, 대학생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계층은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일 것을 충족하여야 함								
기간요건 완화	청년(사회초년생) 계층으로 신청 시 총 소득종사기간 기본 : 총 5년 이내 → 완화 : 총 7년 이내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입주자격</th><th>최대 거주기간</th></tr> </thead> <tbody> <tr> <td>대학생, 청년 계층</td><td>10년*</td></tr> </tbody> </table>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1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10년*								
예비입주자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등	■ 입주자격 완화에 따른 유의사항 (소득·총자산 요건 완화 입주자) 금번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계약한 사람의 경우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이후, 임대차계약기간 갱신시 소득·자산, 자동차 소유관련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할증 없음)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감안하여 인상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거나 LH청약플러스에서 변경[https://apply.lh.or.kr]->고객서비스->나의정보->개인정보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변경-통보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 지구여건

-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당하동 일원 인천검단 택지개발지구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당해지구에는 일반분양·공공분양·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리츠활용 임대주택 등 여러 유형의 아파트 건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당해지구 토지이용계획 등의 확인을 통하여 단지 주변 시설 및 구조물(지하차도, 보도육교, 생태육교, 변압기, 버스정류장 등)계획을 확인 후 계약에 응해야 하며, 구조물로 인한 소음 및 미관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지 요구 등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당해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진행 중이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제영향평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에너지사용계획,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각종 상위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 사업기간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 내 공공청사는 법원, 검찰청, 파출소, 소방서, 행정복지센터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관청의 건립시기 조정 및 건립계획 보류(취소)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 외부에 다수의 묘지, 경작지, 축사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당해지구 내 학교,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본 단지는 도시계획도로에 면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 후 조성공사 및 주변 아파트 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인근에 인천영어마을, 계양천 등이 위치하며, 인천검단지구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통하여 단지주변 외부 여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부여건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단지 내·외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전실확장 등)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거행복지원센터(구 관리사무소), 보육시설 및 경로당 등의 외부 또는 지붕층에 에어컨 및 냉·난방기 실외기가 설치되어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야외시설(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는 2001동 지붕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차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이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중 **지하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3m**이며 내부 주차공간 높이 2.1m입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15~25층 규모입니다.
- 지붕은 전체동 평지붕으로 설치되고,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시공됩니다.
- 2001~2005동 1~3층에 주거약자를 위한 세대가 구성됩니다.
- 2006동의 일부에 주민공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 동 아파트 복도 외부면으로 창호가 설치됩니다.
- 복도창호 및 계단창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으며 복도에 면한 침실(이중창)에는 방범용 방충망이 설치됩니다. (방범창살 없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공용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식재, 포장계획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료·형태·색채·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아파트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저층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수거차량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보안등·가로등·공원등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1층 및 저층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 담장 등은 지구단위계획지침 등에 따라 재질·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공동현관 등에 CCTV가 설치됩니다.
- **주차대수는 총 1,257대(지상주차 427대, 지하주차 830대)**로 이 중 43대는 장애인 주차장입니다.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및 주차대수는 계획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6개소)되며, 이는 총 주차대수에 포함됩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 인근 지상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상가) 주차장으로 상가용도와 입주민용도로 별도의 구분·구획이 없으며, 차량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아파트와 직접 연결된 주동 통합형으로 되어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단지배치상 동별 주차대수, 동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이 균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에 일부 구간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트레이 등의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팬룸이 설치되며 팬룸 상부(옥외공간)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동 위치와 층에 따라 자동차 전조등 불빛 및 지하주차장 소음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 천정, 벽체, 바닥에는 별도 마감이 없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 승강장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 기계실(열교환실), 펌프실이 설치되며 장비류의 주기적인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사양은 층별 기준이 상이 합니다.

- 복도 및 엘리베이터 홀과 같은 공간은 공용부위이므로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는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분리수거함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해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단지 전체 법정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단지 내 분산 설치(동별 1대 이상 설치)되나, 동별로 동일한 수량이 동일한 위치에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본 단지의 단위세대 평면설계는 발코니 비확장형을 기본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세대 내에는 발코니 겸 실외기실이 설치되며 일부 평형에는 별도의 실외기실이 설치됩니다. (36B, 44A형)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및 단열재가 설치되어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 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벽걸이 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직접 콘크리트 벽체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경량벽체로 되어 있는 곳은 벽걸이 TV 설치가 불가합니다.
- 대용량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의 경우 전기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침실 문짝은 ABS 재질입니다.
- 팜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의한 법령에 의거 조명기구, CCTV, 승강기, 주방가구, 신발장 등의 자재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할 예정이며 팜플릿 등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 시 선정된 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전 세대 욕실은 조립식 욕실(UBR)로 시공되며 그에 따라 바닥 난방코일이 없습니다.
- 세대 천장 및 발코니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됩니다.
- 주방가구, 신발장 등 가구 설치부위에는 벽체 및 바닥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입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디자인계획에 의해 일부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전 세대 발코니의 조명기구는 벽부형으로 설치됩니다.
- 발코니에 빨래건조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발코니는 비상대피통로가 설치되어 화재 시 발코니벽체를 통해 옆 세대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비상대피통로에는 자재를 적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탈출용 칸막이는 화재 시 대피통로로 사용되는 공간이오니 관리에 유의(물건적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비확장 발코니는 비난방 공간으로 일부 평형에는 결로 저감재가 시공되나(36B, 44A형), 과도하게 습한 실내 생활환경 및 환기가 부족한 경우 및 당해 지역의 특성상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입주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비확장 발코니에 결로저감재를 시공함에 따라, 부착폭 만큼 발코니의 일부 면적이 감소됩니다.(36B, 44A형)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슴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합니다.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 등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싱크대(개수대) 하부에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급수, 급탕분배기 등이 설치되므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합니다.
- 창호, 가구, 타일,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팸플릿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의 자재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통합관리반(분전반 및 통신세대단자함)이 신발장 뒷면에 매입되어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현장견본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치 않습니다.

■ 일반 사항

- 단지 내에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주거행복지원센터(구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사회적기업 등이 설치되며, 내부시설(운동기구, 작업공구, 장비, 비품, 도서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임차인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인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명칭, 동 표시, 아파트 문양, CI로고, 벽체 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발코니 태양광 모듈 전지판 설치 등은 낙하위험성 등으로 원칙적으로 설치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만약 설치 시 시설물관리주체인 관리소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임대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 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 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 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 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세대는 입주 시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인해 층간, 세대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주택소유,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u>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u>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금융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인천검단 AA9	한국토지주택공사	동부건설(주) (201-81-45685) 외 3개사	-	자체감리

10.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단,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주거약자 전체
	조명밝기 600 ~ 900룩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동체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전체세대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주거약자 전체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주거약자 전체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 ~ 400룩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단,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 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청각장애인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기타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시각장애인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 편의시설 유의사항(추가모집/재임대)

- ▶ 기 입주단지이므로 장애 정도 및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및 가족) 확인서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LH인천북부권주거복지지사

임대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당첨자 ARS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인터넷 청약	· PC :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3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주택 입주신청자용/자격검증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회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안내 및 관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경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할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 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 명부 제외사항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확인 내용				
신청인 본인은 내가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이하 동일)의 입주자 모집에 청약신청 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중 동일한 공급유형 내에서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의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 처리됨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처리 순서기준】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 중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 2.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시, 모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됨 【입주여부 판단기준】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일을 입주일로 판단				
신청인 : (인)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귀하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1조(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방지)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각각을 말한다)에 중복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입주대기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0조(입주대기자 명부 관리) 제3항 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모든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해당 예비입주자를 제외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체결 이전에 제외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화약서

동 확약서의 내용은 임대차계약서 “계약조건” 제16조에 따른 특약으로서,
확약자는 해당내용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본래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모집한 공고에 따른 신청자로서 재계약시 아래와 같은 특수조건이 적용됨을 확인하고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에 따른 재계약 거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1. 재계약을 위하여는 신청자모집공고에 따른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부금을 완납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해당 주택을 명도하여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확 약 자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 . .
 신청단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귀하

각 서

(복학예정자의 복학 및 복학증명서류 제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대 학 명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현재 휴학 중이나 다음 학기(20 년 월) 복학예정자로서 행복주택 공급대상 중 "대학생"으로 신청하였으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학기까지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공급신청 미자격자가 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것임을 서약하며,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각서인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귀하